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. 8. 30 선고 2016가단887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16. 8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경북 영양군 C 대 641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가) 부분 목조 강판 지붕 단층(주택) 45.5㎡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나) 부분 샷시조 스테트지붕 단층(가추) 27.4㎡, 같은 도면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다) 부분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(창고) 20.7㎡를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하고,
나. 2016. 5. 10.부터 제1항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1,3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동휘

별지